

한국직업자격학회 논문투고규정 개정 신규대조표(2020.01.21.)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2조 (주관) (내용동일)	제2조 (주관) (내용동일)													
제3조 (투고자격) (내용동일)	제3조 (투고자격) (내용동일)													
제4조 (원고내용) (내용동일)	제4조 (원고내용) (내용동일)													
제5조 (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회지는 연 3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고, 발간 시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발간횟수와 시기) (내용동일)													
제6조 (원고모집시기) 원고는 수시로 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한다. 단, 발행호 별 발간일 기준 약 60일 전까지 접수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제6조 (원고모집시기) (내용동일)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발간호</th> <th style="text-align: center;">학회지 발행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원고 마감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4월 30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2월 28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8월 31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6월 30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12월 31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월 31일</td> </tr> </tbody> </table>	발간호	학회지 발행일	원고 마감일	1호	4월 30일	2월 28일	2호	8월 31일	6월 30일	3호	12월 31일	10월 31일		
발간호	학회지 발행일	원고 마감일												
1호	4월 30일	2월 28일												
2호	8월 31일	6월 30일												
3호	12월 31일	10월 31일												
제7조 (투고방법)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워드프로세서(훈글)를 사용하여 학회지 원고작성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한다.	제7조 (투고방법) (내용동일)													
제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1/2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는다. 4. 편집위원회 위원은 직업 및 자격의 연구분야 및 연구방법론의 각 분야별로 전문가 1인 이상 포	제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내용동일)													

<p>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5.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제9조 (편집위원회 임원의 자격)</p> <p>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영역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학문업적이 뚜렷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고 기업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학자</p>	<p>제9조 (편집위원회 임원의 자격) (내용동일)</p>	
<p>제10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0조 (편집위원의 임기) (내용동일)</p>	
<p>제11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3. 2차 심사(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4.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5.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p>제11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내용동일)</p>	
<p>제12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직업 및 자격분야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뚜렷하고 관련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학자로 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포함한 풀제(pool system)로 운영하여 각 시기의 투고논문의 내용과 방법론에 적합한 내용전문가 또는 연구방법전문가에 해당되는 전문 심사위원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선임한다. 	<p>제12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내용동일)</p>	
<p>제13조 (논문심사) (내용동일)</p>	<p>제13조 (논문심사) (내용동일)</p>	
<p>제14조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p>	<p>제14조 (논문 심사료) (내용동일)</p>	
<p>제15조 (논문 게재료) 게재료는 15면을 기준으로 150,00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면당 15,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게재료에 100,000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p>	<p>제15조 (논문 게재료) 게재료는 15면을 기준으로 200,00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면당 3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게재료에 200,000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p>	<p>내용 변경</p>
<p>제16조 (원고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저자의 표기 	<p>제16조 (원고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저자의 표기 	<p>내용 변경</p>

<p>① 모든 저자는 국문과 영문으로 소속 및 직위를 표기하여야 한다. (단,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학사/석사/박사/학석사통합/석박사통합의 학위과정/수료/졸업으로 표기한다.)</p> <p>② 첫 페이지 하단 각주 영역에 교신저자 정보 (이름, e-mail 주소, 전화번호 순)를 기입한다.</p>	<p>① 모든 저자는 국문과 영문으로 소속 및 직위를 표기하여야 한다. (단,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학사/석사/박사/학석사통합/석박사통합의 학위과정/수료/졸업으로 표기한다.)</p> <p>② 논문의 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하되, 제1저자는 논문 내의 저자 명단에서 첫 번째에 표기하고, 교신저자는 독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교신저자임을 별도 표기한다.</p> <p>③ 첫 페이지 하단 각주 영역에 교신저자 정보 (이름, e-mail 주소, 전화번호 순)를 기입한다.</p>	
<p>제17조 (저작권) “직업과 자격 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직업자격학회에 자동으로 귀속된다.</p>	<p>제17조 (저작권) (내용동일)</p>	
<p>제1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제18조 (기타) (내용동일)</p>	